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정답 및 해설편 265~265p 번호 : 36	해설	<p><b>36 정답 ③</b></p> <p>③ (○) 경비업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에는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b>폭행죄</b>,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체포·감금죄, 중체포·중감금죄, 체포·감금치사상죄, 협박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죄가 있다.</p> <p>① (×), ④ (×)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살인죄(형법 제250조)는 경비업법 제29조 <b>제1항의</b> 가중처벌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p> <p>② (×) 경비업법 제29조 <b>제1항은</b> 과실범과 관련하여 가중처벌 대상범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단순과실치사상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형의 가중처벌(경비업법 제29조)</b></p> <p><b>①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14조 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제1항(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한정, 존속상해죄는 제외)·제2항(제258조 제1항·제2항 중상해죄로 한정, 존속중상해죄는 제외),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죄), 제260조 제1항(폭행죄), 제262조(폭행치사상죄),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제276조 제1항(체포 또는 감금죄), 제277조 제1항(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제281조 제1항(체포·감금치사상죄), 제283조 제1항(협박죄), 제324조 제2항(특수강요죄), 제350조의2(특수공갈죄) 및 제366조(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b></p>	<p><b>36 정답 ③</b></p> <p>③ (○) 경비업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에는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b>특수폭행죄</b>,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체포·감금죄, 중체포·중감금죄, 체포·감금치사상죄, 협박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죄가 있다.</p> <p>① (×), ④ (×)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살인죄(형법 제250조)는 경비업법 제29조 <b>제2항의</b> 가중처벌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p> <p>② (×) 경비업법 제29조 <b>제2항은</b> 과실범과 관련하여 가중처벌 대상범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단순과실치사상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형의 가중처벌(경비업법 제29조)</b></p> <p><b>②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한정, 존속상해죄는 제외)·제2항(제258조 제1항·제2항의 중상해죄로 한정, 존속중상해죄는 제외),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죄), 제261조(특수폭행죄), 제262조(폭행치사상죄),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제276조 제1항(체포 또는 감금죄), 제277조 제1항(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제281조 제1항(체포·감금등의 치사상죄), 제283조 제1항(협박죄), 제324조 제2항(특수강요죄), 제350조의2(특수공갈죄) 및 제366조(재물손괴등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b></p>
정답 및 해설편 322~322p 번호 : 03	해설	<p><b>03 정답 ④</b></p> <p>④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취소된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5조 제5호).</p> <p>① (○), ② (○) 경비업법 제5조 제4호</p> <p>③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 허가가 취소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b>기계경비업무를</b>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5조 제5호).</p>	<p><b>03 정답 ④</b></p> <p>④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취소된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5조 제5호).</p> <p>① (○), ② (○) 경비업법 제5조 제4호</p> <p>③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 허가가 취소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b>호송경비업무를</b>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5조 제5호).</p>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